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23 선고 2019가단528416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선

담당변호사 백재욱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대희

변 론 종 결 2021. 5. 28.

판 결 선 고 2021. 7. 23.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6. 29.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7. 29. 접수 제11150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2013. 12. 31. 혼인한 부부인데, 원고와 C 사이에 전주지방법원

2020드단103(본소) 이혼 등, 2021드단223(반소) 이혼 등 사건(이하 ‘관련 이혼소송’이라 한다)이 진행 중에 있다.

나. 원고는 C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9가합899호로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9.

7. 25.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206,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2. 9.부터, 106,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2. 19.부터 각 2019. 7. 25.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다. 위 판결에 대하여 C이 광주고등법원(전주) 2019나12430호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0. 5. 14. 원고와 C에게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C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C은 원고에게 174,993,270원 및 그 중

68,993,270원에 대하여는 2018. 12. 9.부터, 106,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2. 19.부터 각

2020. 5. 14.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C이 대법원 2020다233887호로

상고하였으나, 2020. 9. 24. 상고가 기각되어 그 무렵 항소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확정된

항소심판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하고,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을 ‘이 사건

판결금채권’이라고 한다).

라. 한편 C은 2019. 6. 29. 어머니인 피고와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9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9. 7. 29.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가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C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금채권을 가지고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채권은 그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성립 또는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취소하기 위한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808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 또한 비록 매각한 부동산이 채무자가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 또는 은닉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채권자가 그 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집행행위에 나아가기가 불가능하거나 지극히 곤란하게 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재산감소행위와 다를 바 없으므로 매각의 결과 채무자에게 채무초과 상태가 초래되거나 심화되었다면 그 부동산이 시가 상당의 적정 가격으로 매각되었다고 하더라도 사해행위가 된다.

나) 판 단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D, E은행, 주식회사 F, G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적극재산으로 ① 시가 92,500,000원 상당의 전주시 덕진구 H아파트

1호, ② 주식회사 D에 대한 69,781원 상당의 예금채권, ③ 450,000원 상당의 주택청약종합저축, ④ E은행에 대한 1,077,237원 상당의 예금채권, ⑤ 주식회사 F에 대한 4,827원 상당의 예금채권, ⑥ G은행에 대한 17,633원 상당의 예금채권, ⑦ 시가 290,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한편 C은 소극재산으로 ① 주식회사 D에 대한 58,468,104원 상당의 대출금채무, ② 원고에 대한 174,993,2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이 사건 판결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한 C의 적극재산은 384,119,478원(= 위 92,500,000원 + 위 69,781원 + 위 450,000원 + 위 1,077,237원 + 위 4,827원 + 위 17,633원 + 위 290,000,000원)이고, 소극재산은 233,461,374원(= 위 58,468,104원 + 위 174,993,270원)이어서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지만,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함으로써 적극재산이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인 290,000,000원만큼 감소하여 소극재산보다 적어지게 되었으므로 채무초과 상태가 초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경우 비록 이 사건 부동산이 C이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초래된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이 시가 상당의 적정 가격으로 매각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C으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긴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첫째, 이 사건 부동산은 C의 아버지인 J가 매수하면서 C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C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C이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둘째,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채권이 관련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C은 적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C이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다고 볼 수 없다.

나) 판 단

가) 명의신탁 관련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C의 아버지인 J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을 실질적으로 출연한 명의신탁자라고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자료 및 재산분할 관련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1, 2, 3, 을 제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채권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거나 C의 위자료채권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설령 원고의 이 사건 판결금채권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거나 C의 위자료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위 증거들만으로는 구체적인 재산분할 비율이나 위자료 금액을 특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라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인 피고는 채무자인 C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대원

[별 지]

부동산의 표시

1.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5층 업무시설(오피스텔)

지4 3,044.19㎡

지3 3,011.87㎡

지2 3,019.90㎡

지1 2,887.38㎡

1층 1,327.69㎡

2층 내지 14층 각 1,261.76㎡

15층 내지 120층 각 1,260.24㎡

21층 내지 23층 각 1,261.76㎡

24층 내지 25층 각 1,126.56㎡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9층 호

철근콘크리트구조 34.00㎡

대지권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1. 서울특별시 서초구

대 3,689㎡

대지권의 종류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1. 3.689분의 4.9752. 끝.

